

「 하나 e-플러스 정기예금 」 특약(구 하나은행)

1. 개정시행일: 2016. 6. 7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하나 e-플러스 정기예금 (구 하나은행)</p> <p>제1조 약관의 적용</p> <p>『하나 e-플러스 정기 예금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『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』, 『거치식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』, 『하나 고단위 플러스 특약(구 하나은행)』을 적용 합니다</p> <p>제2조 ~제8조 (내용생략)</p> <p><부칙 > 본 약관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일부부터 일부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.</p>	<p>하나 e-플러스 정기예금</p> <p>제1조 약관의 적용</p> <p>『하나 e-플러스 정기 예금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, 『거치식 예금약관』, 『하나 고단위 플러스 특약』을 적용 합니다</p> <p>제2조 ~제8조 (좌동)</p> <p>(삭제)</p>	<p>통합약관에 따른 약관명 수정</p> <p>기본약관통일에 따른 용어 정비</p> <p>부칙 삭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